

K-BIZ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

www.towercrane.or.kr

우)1395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33, 인덕원골드프라자 5층 / TEL 031)422-2340 FAX 031)422-2833

타 위 협 : 2017 - 32호

수 신 : 회원사 제위

2017. 4. 6.

제 목 : 불합리한 단체협약 체결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올해는 아시다시피 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협상을 하는 해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협약당사자간의 제반 관심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통해 문서로 체결된 협정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기타 근로자의 대우 등을 규율하는 규범에는 개별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되는 근로계약이나 사용자가 임의로 작성·변경하는 취업규칙과 기타 회사의 제반규정들이 있지만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모두 단체협약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3. 단체협약은 노사가 자치적으로 정한 각종 규범 중 최상위에서 노사관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우리 조합은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진행하기에 앞서 노조원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단체협약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4. 2015년 단체협약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2017년 4월 13일(목)까지 불임 서식에 의거 우리 조합 팩스(FAX:031-422-2833)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의 의견이 합리적인 노사관계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붙임 : 노조원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및 2015년 단체협약 내용중 개선사항 설문서 1부. 끝.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이 사 장 한 상

